

문서번호	총무처-10714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6.04.05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

★과장	팀장	총무처장	경영전략본부장	
협 조				

2016 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선정 계획

2016.

2016 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선정 계획

< 추진 목적 >

2016년도 회계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서울시에 추천할 외부회계감사인 후보를 선정하기 위함.

※ 관련근거 : 외부회계감사인 추천방법 개선계획(안), 총무처-39294호('15.12.01)

I 현황 및 관련 규정

□ 2015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선정 현황

- 선정 업체 : 안진회계법인 함종호
- 계약 방법 : 수의계약 (서울시 지정 회계감사법인)
 -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지정
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4482, 2015. 4. 29)
- 계약금액 : 금이천이백만원(₩22,000,000)
- 계약기간 : 2015.5.27 ~ 2016.03.31

□ 관련 규정

- 지방공기업법 76조(지방공기업법 제66조 준용)
 - 제66조(결산)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 -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
 - 회계감사인 선임 및 감사 계약 :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
 -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 선정

- 공인회계사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및 결산감사 경험이 풍부한 자
 - 지방공기업 회계 감사 실적이 있는 회계감사인 우선 고려
 -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3년 이내 교체를 지양하되,
 - 연속하는 6개 회계 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
 - ※ 기타 계약 체결 등은 지방계약법 등 준용
- '15년도 투자기관 회계감사인 지정 및 운영 계획 (市공기업담당관-3430, '15.04.02)
 - 신규감사인 선임시 4개 이상 업체의 참가신청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수의 후보자 추천
 -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: 외부전문가 과반수 구성
 - 제안서 평가기준 : 기술능력평가(80점)+가격평가(20점)
 - 회계감사인 지정동의서 수령(추천시 첨부)

II 2016 회계감사인 선정계획

- 설계가격 : 23,100,000원(부가세 포함)
- 회계감사의 과업 범위 및 회계감사인 책임 한계
 - 행정자치부 기준
 -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의 “회계감사 기본 요구사항”을 회계감사시 검토하고 감사보고서에 반영
 - 연중 1회 이상의 중간감사 실시
 -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주석 공시사항 적정하게 작성
 -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감사인 자격 부여 등
- 세부 과업범위
 - 회계제도 운영, 예산 관리 및 집행의 적정 여부
 - 재무제표 및 총괄원가 계산의 적정 여부
 - 자금 및 미수금 관리 적정 여부
 - 재고자산·유형자산 관리 적정 여부

- 채무 관리의 적정 여부
- 각각의 대행사업별 예산 집행 및 정산의 적정 여부
- 경영 개선을 요하는 사항 적출과 그 대책 방안 강구
- 기타 회계 및 경영지도, 자문 확대 운영과 투자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적출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자문 실시
- ※ 첨부 계약서(안) 및 과업지시서(안) 참조

Ⅲ 2016년 회계감사 추천 업체 선정

- 추천대상자 모집 방법
 - 모집 방법 : 나라장터에 공모 게시
- 회계감사 제안서 평가
 - 제안서 평가 대상
 - 최근 5년내 공기업 회계 감사 실적이 있는 자(입찰공고일 기준)
 - 제안서 평가자
 - 정량평가 : 재무팀
 - 정성평가 : 평가위원회
 - 위원회 구성 : 8명
 - √ 위 원 장 : 경영전략본부장
 - √ 내부위원 : 총무처장, 재무팀장
 - √ 외부위원 : 시민옴부즈만 1명, 서울시 출자 공기업 결산 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 4명
 - 가격평가 : 재무팀 평가
 - 제안서 평가기준
 - 기술능력 평가 : 80점
 - 정량평가(50점), 정성 평가(30점)
 - 가격평가 : 20점

- 세부 평가 기준

평가 지표		배점	평 점				
			A	B	C	D	E
기술 평가	정량 평가	① 근무경력 3년 이상 소속 공인 회계사 인원 (수습회계사 제외)	10	9	8	7	6
			200명 이상	100명 이상	50명 이상	30명 이상	30명 미만
		② 매출액 규모 (5년 평균)	10	9	8	7	6
			200억원 이상	100억원 이상	50억원 이상	30억원 이상	30억원 미만
		③ 최근 5년간 공기업 감사 실적 ※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	20	18	16	14	12
			10건 이상	8건 이상	5건 이상	3건 이상	3건 미만
		④ 최근 5년간 지방 공단 감사 실적 ※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	10	9	8	7	6
			10건 이상	7건 이상	4건 이상	2건 이상	2건 미만
정성 평가	⑤ 감사수행계획의 충실도	10	10	9	8	7	6
	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	⑥ 감사 조직 체계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	10	10	9	8	7	6
	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	⑦ 공단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경영자문 제공계획	10	10	9	8	7	6
	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가격 평가	⑧ 감사보수료	20	※ 평점산식 :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협상에 의한 방법 준용(비예가방식)				
합계		100					

□ 서울시 추천

- 1순위 및 2순위 업체와 중점 회계감사 요구사항 및 회계감사 실시기준,
회계 및 경영지도, 보수 수준 협의 후 지정 동의서 수령
- 1순위 및 2순위 업체 서울시 추천
- 1순위 및 2순위 업체 선정 거부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추천

□ 회계감사 계약금액

○ 행정자치부 기준

- 회계감사 영역, 난이도, 지자체의 예산 실정 등을 감안하여 지방

공기업별 자율적으로 결정

→ 市 지정업체가 제안한 감사 보수를 기초로 협의

IV

행정사항

□ 예산현황

- 2016년 회계감사 용역→ 2017년 회계연도 예산집행(다년도 계약)
 - 예산과목 : 본부, 판매비와관리비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, 지급수수료
- 제안서 평가 위원회 외부평가위원 평가수당 지급
 - 예산과목 : 본부, 판매비와관리비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, 지급수수료
 - 지급액 : 예산운용계획에 따른 금액

□ 향후 일정

- 업체선정 ※ 일상감사 완료('16.4.5)
 - 방침 수립(4월초) ⇨ 공고게시(4.6예정) ⇨ 제안서 접수마감(4.18예정)
 - 제안서 평가(4.20예정) ⇨ 서울시 추천(4.22예정)
 - 계약 체결·과업 개시(4.30예정)
- 2016년도 회계감사 시행
 - 2016년 11월 중간감사 시행
 - 2017년 2월까지 회계 감사 완료

- 따로붙임
1. 서울시 2015년도 투자기관 회계감사인 지정 및 운영계획 1부
 2.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(외부감사인 선정관련) 1부
 3. 계약서(안) 및 과업지시서(안) 각 1부
 4. 제안요청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
 5. 부당계약이행 점검표 1부
 6. 가격산출조사서 1부 및 견적서2부. 끝.